

2023년도 제29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1. 21.(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민아(분과위원장), 김성주, 김정숙, 손수호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8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이숙형 부장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43건(안전번호 제2023-236011호~237253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236011호~230612호는 ○○○○ 블로그에 음악을 게시한 사안으로 안전번호 제2023-236011호는 음원 전체 분량을 게시하지 않은 점, 음질이 조악하여 합법 시장의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며 안전번호 230612호는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36013호~236017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의견임.

안전번호 제2023-236018호~236038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79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민아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9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8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민아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C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고 비공개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이숙형 부장: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민아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이숙형 부장: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82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36011호~23061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음악을 게시하면서 게시자의 생각 등을 같이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그동안 우리가 심의한 대상은 상습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가 많았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음.

- 이숙형 부장: 그러함. 다만 스트리밍 형태로 음악이 게시되어 있음.
- B 위원: 음원이 게시된 분량을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보호원에서 이러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논의 해 볼 필요가 있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36011호~236012호에 대해 원안 대로 제2023-236011호는 부결하고 제2023-236012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36011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36012호는 게시물에 대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36013호~236017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서 최신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배포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준근 주임: 게시자는 시정권고를 받은 이후 블로그의 자막 게시물을 모두 삭제 혹은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공지사항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다'는 내

용과 해외 블로그 사이트를 주소를 게시하였음. 그리고 해외 블로그에는 게시자가 직접 제작한 자막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게시하고 있음.

- 이숙형 부장: 특정 민원인이 자막을 집중적으로 신고하고 있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36013호~236017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36013호~23601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36018호~23603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36018호~236038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36018호~236038호는 게시 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 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 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36039호~237253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방송, 출판/어문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 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 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불타는 장미단’)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36762호 (‘불타는 장미단’)는 2023.10.06. 공개한 한국 영화로 웹하드에서 190포인트에 판매중임.
(‘신병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36864호(‘신병2’)는 2023.10.11. 개봉한 한국 영화로 웹하드에서 2600포인트에 판매중임.
(‘이두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36949호(‘이두나!’) 는 2023.08.30. 개봉한 한국 영화로 웹하드에서 260포인트에 배포중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 번호 제2023-236039호~23725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3-236039호~23725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236011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36012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전번호 제2023-236013호~236017호, 제2023-236018호~236038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36039호~23725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김민아 분과위원장이 제29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9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1. 28.

분과위원장 김민아

위원 김성주

위원 김정숙

위원 손수호

위원 한승원